

- 열린 혁신 디지털오픈랩 구축 사업 -
**2024년 ICT 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제작전문기업 모집 공고(바우처 공급기업)**

◆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디자인, PCB설계, 외형, SW, AI분야 전문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제작전문기업은 공급기업으로서 수혜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 받아 기술지원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디지털오픈랩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ICT 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 사업목적

- ICT 국내 제작기반(바우처 제작전문기업)을 활용, 혁신 디바이스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제작 생태계 제고 및 중소·스타트업의 창업·투자 등 성과 도출
- 디자인제작, PCB 설계제작, 외형제작 지원 등 제작전문기업 참여유도를 통해 제품화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제작 서비스를 공급하여 수혜자 중심의 혁신 디바이스·서비스 제품화 지원체계 구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0월

□ 지원 규모 및 예산 ※ 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수행방식	지원분야	지원규모(건당)	지원규모(건수)	비고
바우처 지원	디자인, PCB, 외형제작, SW지원,	최대 800만원	30건 내·외	분야별 지원 건수는 수혜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상이
	AI기술활용지원	최대 2000만원	5건 내·외	

□ 모집 방법 및 규모

분야	기업 수	모집 방법
디자인 제작	2개사 이상	ICT 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제작전문기업 모집 공고 *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
PCB설계 제작	2개사 이상	
외형 제작	2개사 이상	
SW지원	2개사 이상	
AI기술지원	2개사 이상	

- **사업내용** : ICT 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제품화를 위한 제작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작전문기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이 수혜기업을 분야별로 지원
 - **(제작전문기업 풀 구성)** 디지털오픈랩의 디자인제작, PCB 설계제작, 외형 제작, SW분야, AI기술활용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별 제작전문기업 모집
 - 공급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제작 분야 및 전문성 등을 반영 필수
 - 지원내용은 수혜기업의 개발내용에 따라 지원 및 범위(안)을 참고하여 결정
 - 수혜기업의 선택이 없는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바우처 지급)** 수혜기업은 지급받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업과 서로 협의하여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공급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제작전문기업은 수혜기업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진행 * 공급금액만 지원,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분야**(디자인 제작^①, PCB 설계제작^②, 외형 제작^③, SW^④ AI^⑤)
 - ① **(디자인 제작)** 디자인 기획(컨셉 시각화, 스케치), 모델링(3D 모델링 & 렌더링), 디자인 시방서 등 2·3차원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지원내용 및 범위(안) >

구 분		지원내용
디자인 제작	디자인 리서치	- 디자인 트렌드 조사, Needs 조사, IP 조사
	디자인 방향성 (Sketch, Ideation)	- 아이디어 Sketch를 통해 Design Concept 정리(3Type) 기능성 등을 고려한 기존 디자인 설계 검토
	3D Modeling & Rendering	- 3차원 형상으로 제품디자인을 다양한 관점(view)에서 검토, 실제와 유사한 재질감 부여를 위해 Rhino 3D, Key Shot를 이용하여 표현(3Type)
	최종 결정 디자인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 최종 결정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AVI, 30초 이내)
	디자인 수정	- 기구설계 진행 이후 디자인 부분 수정 및 디테일 수정에 대한 Feedback 작업(1회)
	디자인 시방서 지원	- 제품의 샘플제작(Design & Working Mocup)을 위한 Color 및 인쇄, 재질 시방서 지원 - Design Soft Mocup sample 1ea(제품 수준에 따라 최종 디자인 샘플 1ea, 3D 프린팅_FDM 적용)
	디자인출원등록	- 최종 결정된 디자인 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디자인 분쟁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디자인출원등록 지원(1회)

* 상기 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혜기업은 제작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8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가능

② (PCB 설계 및 제작) 회로 설계 및 제품·회로 구조 최적화를 통한 PCB 제작 및 조립 등 지원

< 지원 내용 및 범위(안) >

구 분		지원내용
PCB 설계 제작	회로 설계	- 회로보완 설계, 부품 spec 및 제품 기능 개선 사양 제안 - 외형을 고려한 회로 구조 최적화 검토 지원
	PCB 외형 설계	- 부품별, 부분 및 전체 조립부별 PCB 외형 설계 사전검토
	PCB 설계	- 층수, 두께, 재질, 표면처리방법 등 선정 지원 - PCB 제작용 거버데이터 도출 - 임피던스, 빌드업 설계 및 부품특성을 고려한 설계지원
	PCB 제작·조립	- 기능 및 성능 검토 후 PCB 제작 - PCB기판에 부품 납땜 조립(SMT) - 부품 구매 조달 - SOLDERING 방안 제안:무연,유연등 - 기능 검증

* 상기 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혜기업은 제작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8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가능

③ (외형제작) 산업용 3D 프린터, CNC 가공 등을 통한 외관제작, 스트샘플 및 목업 제작(Prototyping/Styling/Working Mockup) 등 지원

< 지원 내용 및 범위(안) >

구 분		지원내용
외형 제작	모델링 검증	- 3D Data의 형상구현이 제작을 감안한 완벽성 검증 (Data찢어짐, 변형)
	공차검증	- 외형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정적해석, 열해석 - 기구물 조립과 이에 따른 성능 구현을 위한 공차 설정 검증
	기구설계	- 제품의 형태나 부품의 두께, 무게 등 내부 부품 구조를 고려한 설계
	재질 선정	- 제품에 적합한 재질 등 선정
	가공	- CNC·ABS 가공, 도색·도장(후가공)
	목업제작	- 테스트 샘플 및 목업 제작(Prototyping/Styling/Working Mockup)

* 상기 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혜기업은 제작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8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가능

④ (SW 지원) 디바이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운영 SW 향상을 위한 모델 설계 등

< 지원 내용 및 범위(안) >

구 분		지원내용
SW지원	빅데이터	-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예측, 활용 등 - 데이터 시각화 등
	응용SW	- 가상 시뮬레이션,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등 - 시스템 SW(운영체제, 미들웨어) 개선 등
	컴퓨팅 시스템	-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기반 컴퓨팅 기술 도입 및 개선 등

* 상기 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혜기업은 제작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예산 한도 內(8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가능

⑤ (AI 기술활용 지원) 디바이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 지원 내용 및 범위(안) >

구 분		지원내용
AI 기술활용	기술활용	-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가공 및 모델링 등 - 생성형 AI(LLM 모델 등) 활용 및 도입 등

* 상기 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혜기업은 제작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예산 한도 內(2,0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제작 가능

2

지원제한

- 지원자격(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디지털오픈랩의 디자인제작, PCB 설계제작, 외형제작, SW, AI기술 분야를 수혜기업(디바이스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솔루션을 갖춘 분야별 제작전문기업(중소·중견 기업)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할 수 있음

- 제출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타 실증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③ 참여제한 여부 및 참여제한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지원기업과 위탁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④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할 수 있음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범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 (적용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11개 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조회기간)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 적용
- (제한조건)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 보조금 반환, 사업선정 취소하고 추가 패널리티 부여(3년간 참여제한)

3

과제 평가기준

- (사전검토)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진행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선발절차) 접수 → 선정평가 위원회 제안서 서류 심사 → 제작전문기업 선정

구 분	심사방법	비 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 제출서류 완비 여부 및 자격조건 확인 · 접수확인 메일 발송 	* 공고 및 접수기간 (04.02. ~ 04.22.)
제작전문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에 의한 서류심사(가이드라인) · 필요시 선정 제작전문기업(공급기업) 사전 면담(설명회) · 제품화 바우처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 심사 후 선정 통보 예정

- (평가기준) 기업 역량(60%)과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전략(40%) 등 종합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기업 역량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실무경력 5년차 이상 1명을 포함하고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총 3인 이상) ■ 기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의 기업이거나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납품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제작 관련 유사 실적(3건/년 평균) 이상 있는 기업 ■ 전문장비 또는 솔루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작업항목에 해당하는 필수 하드웨어 장비 혹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1개(set) 이상 보유·운영 하고 있는 기업 - 혁신기술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전문기업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제작전문기업 (디자인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전문분야 : 제품디자인 분야를 보유한 기업)

사업 이해도 및 지원전략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취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정도 - 바우처 제작전문기업 신청서 내용의 체계성 및 적정성 - 디지털오픈랩 사업 연계로 인한 역량 강화 ■ 바우처 수행 전략 및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기술공급 수행전략의 우수성 - 바우처 지원 서비스 방안 및 내용의 적합성
가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오픈랩 지원사업 참여기업(3점) * 동일 지원사업은 제외 ■ 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사업 참여기업(3점)
소계	100%

- 과제선정 : 서면심사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과제
-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 기업(컨소시엄)
 - 사업단 간 최종 협의 후 협약을 통해 확정되며, 상호 간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포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면심사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절차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		
제작전문기업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지원사업(https://digitalopenlab.kr) 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4월 초 ~ 4월 중(3주)
↓		
제작전문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급기업 선정 (서류심사)	4월 말
↓		
수혜기업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지원사업(https://digitalopenlab.kr) 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5월 초 ~ 5월 중(3주)
↓		
수혜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급기업 선정 (서류심사)	5월 말
↓		
협약체결	· 선정기업 지원과제 협약 체결 및 바우처 지급	6월 초
↓		
사업수행	· 선정 과제 수행(제품화 바우처)	협약일 ~ 10월 말(5개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과제 수행내용 및 최종 결과 평가 · 사업비 검토	11월
↓		
사업비 지급	· 경과원→제작전문기업 사업비 지급	12월 초
↓		
성과 관리	· 기업 현황 및 성과조사	종료 후 5년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상황, 공모전 연계지원 등 수혜기업 추가 모집이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04. 02.(화) ~ 04. 22.(월) 자정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 가입 필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s://digitalopenlab.kr/>

※ 유의사항

- 홈페이지 폭주 및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이 커서 파일 제출이 안되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홈페이지 등록시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서류 접수가 불가하니 일정을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양식(붙임, 별첨) 작성하여 모두 제출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제작전문기업 신청서	[붙임]	-
2	전문 인력 현황표	[서식1]	보유기술에 대한 소속전문인력 현황표 (* 양식에 맞춰 작성)
3	장비서비스 보유현황표	[서식2]	솔루션 서비스 기업 필수서류> [별첨2] 솔루션 세부설명자료
4	범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실적 증명 확인서	[서식3]	관련 증빙서류 : 시·솔루션 납품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기술이전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1. 대표자 필수작성(공동대표 모두 기재) 2. 불가피한 사유로 [별첨1]에 개인 이메일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작성 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
6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필수
7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필수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국세청홈택스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제출일자 포함
9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20~'22))	국세청홈택스	당해연도 기준 설립 3년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준비된 기업은 '21~'23으로 제출 가능
10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벤처 확인서	국세청홈택스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제출일자 포함

[자료 제출요청]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 2개 이상의 AI솔루션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각 솔루션마다 AI솔루션 세부자료(별첨2) 제출
 - * 제출서류 파일명 : "제출서류명_기업명" (*AI 솔루션 세부자료 파일명은 [참고]파일 참조)
(예시) [붙임] 오픈랩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신청서_한강시스템
 - * Mac OS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파일명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Window OS 환경에서
파일명이 깨지지 않도록 제출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 연락처 : 031-710-8703
- 이메일 : imlsj0125@gbsa.or.kr

6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 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과제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활용 및 기타 법적 권리에 관한 사항
 -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결과 제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근거, 가명처리 여부, 위탁처리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사업 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모 필수

- * 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 적법성과 배포, 활용에 문제가 없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 구축
 - * 원시데이터 등의 확보를 위해 활용할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초상권 이용 동의서, 저작권 계약서는 신청서식 양식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
 - 데이터에 개인정보(얼굴, 번호판 등), 국가보안사항(공간정보, 위치정보 등) 등이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 조치 방안 제시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와 관련한 법적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를 필요 시 제출하고 내용에 대해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확정
 - 원시 데이터 등을 구매 및 협약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 제안 시 증빙자료(계약서, 협약서, MOU 등) 제출

* "원시데이터"란,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최초 단계에서 수집 또는 생성한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로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함

-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이미지, 영상, 음성 등)와 데이터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
- 수행기관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지재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
- 데이터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확인 즉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모든 기업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안규정 위반 이력 제출 필수 (평가 시 관련 내용 반영)
-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은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의무적으로 시행
- 사업 수행기관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제공되는 기본 가이드라인, 표준 양식 등 활용

-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본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 시 제공